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10.
3. 회부연월일 : 2026.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 제7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인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 공무원(「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조직)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소년보호직공무원</u>	7. <u>보호직공무원(「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을 말한다)</u>
8. ~ 18. (생략)	8. ~ 1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민방위란 전시·사변 등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함¹⁾.

이러한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²⁾, 민방위대의 조직은 편성 의무자인 만 20~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편성 의무자가 아니지만 민방위대 편성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에 해당하는 지원자³⁾로 구성됨.

[2025년 민방위대 현황]

민방위대 : 84,022개		민방위 자원 : 3,284,912명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76,276개	7,746개	3,278,861명	6,051명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편성 의무자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직군에 속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 1)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2)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민방위대 편성은 매년 1월 10일 18:00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역민방위대는 통·리 단위의 통·리대와 시·군·구별 주소지 단위의 기술대로 구분됨.
- 3)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과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원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이 중 소년보호직공무원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속 기관(소년원 등) 내에서 수용 청소년을 보호·관리하고, 교정시설의 기능 유지와 치안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2007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보호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을 통합하여 ‘보호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⁴⁾, 개정안은 이러한 명칭 변경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보는 ‘보호직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반면, 1977년 신설된 소년분류심사원⁵⁾은 위탁·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⁶⁾, 2007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직전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2006. 8. 3. 시행)에 따르면 소년보호직 공무원이 일반직 정원에 편성되어 있었음⁷⁾.

4) 참고로, 2007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이전의 보호관찰직공무원(보호직)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었음.

5) 1977년 소년감별소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어 1995년부터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직무) 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보호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당초 소년 보호직공무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을 위하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 되는 보호직공무원에 소년원뿐만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도 민방위기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7) 6-7페이지 참고

참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 [2006. 8. 3. 시행]

[별표 9] <개정 1998.6.29, 1999.5.24, 2000.3.7, 2001.3.29, 2001.10.10,
2002.6.8, 2002.8.9, 2003.12.31, 2004.2.28, 2005.3.24, 2005.5.2,
2005.8.2, 2006.2.3, 2006.8.3>

<u>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공무원정원표(제33조관련)</u>	
총 계	974
별정직 계	38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15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23
일반직 계	744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16
기술서기관	13
서기관 또는 소년보호사무관	11
소년보호사무관	64
의무사무관	8
소년보호주사	112
건축주사	1
간호주사	4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소년보호주사보	170
의료기술주사보	1

간호주사보	15
전산주사보	1
소년보호서기	146
식품위생서기	9
간호서기	1
소년보호서기보	159
식품위생서기보	8
간호서기보	1
기능직 계	192
기능8급 전기원	6
기능9급 전기원	6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4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방호원	3
기능10급 건축원	6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난방원	23
기능10급 운전원	28
기능10급 위생원	55
기능10급 사무원	16
기능10급 방호원	39